

고도의 통치행위라는데...헌법학자들 “명백한 국헌문란”

헌법학자들이 분석한 윤 대통령 담화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고도의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법학자들은 이같은 대통령의 주장은 탄핵심판을 염두에 둔 ‘꼼수 법리’로, 이번 계엄은 명백히 ‘국헌문란’이자 현재의 심판대상이라며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의 주장은 1979년 김재규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에 등장한 법리를 인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당시 김재규 씨는 “비상계엄이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는 것이라는 견해를 전제로 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이 없다”고 주

“탄핵심판 염두에 둔 ‘꼼수 법리’...계엄은 현재 심판 대상”

“김재규 대법 판례 토대 주장했지만 전두환 판례 적용 맞아”

장했다.

대법원은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 제반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 재량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이 상당하다는 판단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경우,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라고 할 것”이라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과 같은 것은 헌법상 계엄의 해제 요구권이 있는 국회만이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선포가 당연 무효의 경우라면 모르더라도,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선포 요건의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 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대통령의 고도 통치행위를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1979년 판례는 당시 대통령이 숨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현재와는 판이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오히려 1996년 전두환·노태우씨의 내란범죄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현재 상황과 겹맞는 판례라고 분석했다.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로서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사법부에 없다”면서 “다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교수는 “윤 대통령은 1996년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 사안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1979년 판결문만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기관인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유리장을 깨고 집입을 지시한 자체로도 이미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면서 “내란범죄가 확실한 만큼 사법심사를 피해 갈 수 없다”고 말했다.

민병노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교수도 “1996년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후 전국 확대 행위 자체를 국헌문란에 해당된다고 봤다”면서 “대통령은 이제와서 국회에 못 들어가게 막은 적 없다. 그냥 질서 유지만 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

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키라고 국방부장관에게 말했다”면서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이날 담화는 탄핵심판이 진행될 경우 제시할 법리를 내비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시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국헌문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고 국회를 막지 않도록 했고, 질서 유지 차원에서 계엄군을 투입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헌법학자들은 “이미 TV나 SNS상에서 계엄군이 국회의 유리장을 깨고 들어가는 장면들이 다 나온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법리는 통할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도쿄·서일본신문 기자, 본보 계엄 호외 호평 “역시 광주”

본사 편집국 찾아 제작과정 취재 80년 5·18 삭제·검열 기사 관심

일본 신문 취재진이 호외제작과 집중보도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입체적으로 조명한 광주일보사를 방문 취재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광주민주화운동기인 1980년 5월 20일 광주일보(옛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의 사직서 제출과 이번 호외(비상계엄에 민주주의 멈춰) 제작을 ‘신문의 존재 가치와 기자정신’을 보여준 사례라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서일본신문(니시닛폰신문) 이진우·히라야마 나루미(平山 成美) 기자, 도쿄신문 우에노 미키히코(上野 美輝彦) 서울지국장 등 12일 광주일보사 편집국을 방문해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호외 제작까지의 과정 등을 취재했다.

이들은 1980년 비상계엄 확대로 촉발된 광주민주화운동과 함께한 광주일보의 역사를 주목했다. 계엄군의 혹독한 언론통제기에 발행한 1980년 5-6월 광주일보사의 기사를 보며 놀라워하기도 했다.

일본 기자들은 특히 광주일보(옛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의 사직서와 당시 계엄군에 의해 삭제·검열된 기사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사태에서 호외 발행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과 제작 당시 긴박했던 상황 등을 들은 일본 기자들은 “역시 광주”라며 칭찬했다.

우에노 미키히코 지국장은 “광주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대하는 느낌은 서울과 다른 것 같다”며 “나일 신문을 발행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서둘러 호외를 만든 판단



서일본신문 이진우(왼쪽 두번째부터 시계 방향으로)·히라야마 나루미 기자, 도쿄신문 우에노 미키히코 서울지국장이 12일 광주일보사를 방문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일보(옛 전남매일신문) 신문을 보면서 최권일 광주일보 편집국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도 혁명했다. ‘역시 광주’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우에노 지국장은 “이번 사태는 확실히 역사에 남겨야 하는 일이고, 신문사는 당연히 역할을 해야 했다”며 “광주일보에서 호외를 발행해 같은 신문 기자로서 감사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도 “광주일보 호외를 보고 ‘5·18 당

시 계엄령 선포를 직접 겪으신 광주 분들은 서울시민과 온도가 차가 크겠다”는 생각에 광주를 찾아 취재하러 왔다”고 설명했다.

히라야마 나루미 기자는 “지난 7일 여의도로 집회 취재를 갔을 때 젊은 청년들이 ‘정말 군이 틀어박힌 줄 알고 무서웠다’는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일본인 기자로서 ‘정말 그렇게 느꼈을까’라는 생각이

했다”며 “광주일보가 호외를 내는 움직임과 과정을 보고 한국인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느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디어의 발전으로 신문의 위상이 낮아졌고, ‘호외’가 잊혀져 가고 있던 상황에 광주일보 호외는 ‘신문의 존재’를 증명했다”고 극찬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제1회 김대중 평화상에 ‘민주화 대모’ 조아라 여사

김대중 대통령을 기억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린다.

광주전남김대중재단(재단)은 오는 16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평화,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1회 김대중 평화상 시상식·송년의 밤’ 행사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처음 제정된 ‘김대중 평화상’은 시대적 혼란 속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받는다. 김대중 평화상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을 위해 헌신한 개인과 단체에 수여될 예정이다.

제1회 김대중 평화상 수상자로는 ‘소심당 조아라 선생’이 선정됐다. 조아라(1912~2003년) 선생은 독립운동가이자 여성 지위 향상, 민주화운동에 일생을 바쳐 ‘광주의 어머니’, ‘민주화의 대모’로 불린다. 그는 1930년대 일제에 항거하다가 옥고를 치렀고 해방 이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간 수습 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구속자와 부상자들을 돌보고 1980년대 가족법 개정 서명운동 등에도 앞장섰다.

시상식은 오는 16일 오후 4시 라마다플라자 총창호텔 13층 연회장에서 열린다.

최경주 재단 공동대표는 “김대중 대통령과 대한민국이 오랜 시간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성숙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체포하고 탄핵해야 한다”며 “재단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2024. 12. 13.
전라남도지사

하천구역 결정, 홍수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공고

지방하천 장성천 등 13개 하천에 대하여 하천구역 결정, 홍수관리구역 지정,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기에 하천법, 제103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하천명	하천종류	하천구간		구분	면적(㎡)	경장(m)	사유
		기점	종점				
장성천	지하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광주광역시 서남구 도곡동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영산(구)기동	6,30	하천구역 결정	823,673	고시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영산(구)기동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영산(구)기동	3,74	하천구역 결정	191,225	고시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용수리 217-1번지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창평(구)창평리	2,99	하천구역 결정	117,996	고시
		전라남도 구례군 신원면 화사리 116-1번지	전라남도 구례군 신원면 사사(구)창평리	2,26	하천구역 결정	47,400	고시
		전라남도 영광군 송지면 대동리 1137-2번지(영양원유지(영수)로 확대)	전라남도 영광군 송지면 신정 1번지	3,21	하천구역 결정	182,727	고시
		전라남도 강진군 도원면 강당리 71-2	전라남도 영광군 옥산면 옥산(구)창평리	5,96	하천구역 결정	530,789	고시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신명리 320-1번지	전라남도 해남군 옥산면 해남(구)창평리	1,10	하천구역 결정	40,584	고시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종촌리 964-2번지 일원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종촌리 962-2번지 일원 강진(구)창평리	2,07	하천구역 결정	106,696	고시
		전라남도 순천시 송주읍 도동리 790번지	전라남도 순천시 송주읍 송림리 442-1번지 일원	8,81	하천구역 결정	343,767	고시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외동리 297-3번지 일원 (전남/전북 도경계)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외동리 1031-1번지 일원 외동(구)창평리	2,71	하천구역 결정	310,263	고시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외동리 127번지 일원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외동리 1031-1번지 일원 외동(구)창평리	8,56	하천구역 결정	527,492	고시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양산리 915-1번지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양산리 915-1번지 일원	10,19	하천구역 결정	671,737	고시
		전라남도 영광군 해남면 향리리 67-7번지	전라남도 영광군 송진읍 송림리 1610번지(영산) 일원	15,20	하천구역 결정	1,319,700	고시

하천명	하천종류	홍수관리구역 구간		구분	면적(㎡)	경장(m)	사유
		기점	종점				
생양천	지하	전라남도 순천시 송주읍 도동리 934번지	전라남도 순천시 송주읍 도동리 934번지	0,03	205		기본 계획 변경
		전라남도 순천시 송주읍 도동리 967번지	전라남도 순천시 송주읍 도동리 967번지	0,22	1,581		
		전라남도 순천시 송주읍 도동리 968번지	전라남도 순천시 송주읍 도동리 968번지	0,26	4,138		
		전라남도 순천시 송주읍 도동리 969번지	전라남도 순천시 송주읍 도동리 969번지	0,08	345		
		전라남도 순천시 송주읍 도동리 983번지	전라남도 순천시 송주읍 도동리 983번지	0,12	1,385		
		전라남도 순천시 송주읍 도동리 991-1번지	전라남도 순천시 송주읍 도동리 999번지	0,15	1,241		
		전라남도 순천시 송주읍 도동리 1000번지	전라남도 순천시 송주읍 도동리 980번지	0,24	1,411		
		전라남도 순천시 송주읍 도동리 400-2번지	전라남도 순천시 송주읍 구곡리 400-2번지	0,30	7,090		
		전라남도 순천시 송주읍 송림리 129번지	전라남도 순천시 송주읍 송림리 1305번지	0,11	1,010		
		전라남도 순천시 송주읍 송림리 1292번지	전라남도 순천시 송주읍 송림리 646-302번지	0,40	6,749		

3.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영업에 관한 사항
 * 지형도면 및 홍수계획도는 관계 기관에 의뢰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영양원유지: 전라남도 차안읍영양원유지 각 서구별 해당부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자연환경과 061-286-3082 또는 시/군 하천관리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4년 12월 09일 주주 전원 서면결의에 의하여 해산을 결의 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12월 13일
주식회사 에스에이치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현수동로 575, 1층 3호
창산인 김익찬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박현숙(760102-2XXXXXX)
- 최후추수: 여수시 덕양로 157, 311동 501호 (화장품, 주공아파트)

피상속인 망 박현숙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 정밀한 순천지원 2024년 단453호 신청하여 2024년 12월 5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12월 13일
• 상속인: 조순락(521223-2XXXXXX)
여수시 소라면 죽림로 38, 202동 501호(죽림휴먼시아)
• 신고기간: 2024. 12. 13. ~ 2025. 2. 22.
• 채권신고처: 상속인 조순락의 주소

kwangju.co.kr
先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